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사업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며, 장애수당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그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2. ~ 12. 1., 2022. 5. 9.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908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같은 조 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

다.

제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를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3조의7의 제목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44조의2의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제44조의5”를 “제44조의6”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사) 및 같은 목 2)아)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별표 1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을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6.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별표 5 I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로 하고, 같은 I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 ·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총무	1) 사회복지사 2) 장애인재활상담사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사회재활교사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심리학 · 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라. 시설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또는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별표 5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치료시설은”을 “재활치료시설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는”으로 하고, 같은 Ⅱ 제2호나목1)차) 본문 중 “관광”을 “관장”으로 한다.

별표 5 Ⅱ 제2호나목2)가) 관장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1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및 같은 가) 4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각각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로 한다.

별표 5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Ⅲ 제9호라목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란 다음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의 임시보호, 병원 통원 치료 등의 의료지원, 그 특성을 고려한 상담 등의 심리치료 및 교육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Ⅳ 제2호가목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1)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로 한다.

별표 5 Ⅴ 제5호가목1)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1) 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마)부터 사)까

지로 하며,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1) 사)(종전의 바)) 중 “위 가)부터 바)까지에”를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에”로 한다.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5 Ⅴ 제5호가목2)나)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2) 다) 및 라)를 각각 라) 및 마)로 하며, 같은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2) 마)(종전의 라)) 중 “위 가)부터 다)까지에”를 “그 밖에 가)부터 라)까지에”로 한다.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5 Ⅴ 제5호가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회복지사

별표 5 Ⅴ 제5호가목3)다)를 라)로 하고, 같은 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별표 5의4 제목 중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중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장애인 쉼터란(종전의 피해장애인 쉼터란) 나목 본문 및 같은 호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란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다만,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한다)과 분

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6 중 전문(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문 (5)	의지・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별지 제1호의4서식 제2쪽 중 “종전등록증”을 “기존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4.5㎝)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나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 표시하고 자동차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신청기관 방문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 법 제32조의9제2항 ----------. ②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 ③ ---------- 법 제32조의9제2항----------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해야 ------.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사람은 ---------- 읍·면·동장---------- 제출해야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통지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④ 제3항----------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사람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 제6호----------.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 장애인 ----------.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
1. 의지·보조기 기사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
2. 언어재활사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 제출해야 ----. ----------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서식)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 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 제44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 제4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제68조(서식) ①----------제44조의2 제1항----------제44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